

**수 신** 울산상공회의소 회원업체 대표**참 조** 인사·노무 담당 부서장**제 목** 노동조합법 제2·3조 개정(노란봉투법)에 따른 기업 대응 실무교육 개최 안내**발 송**

No 경영향상팀-16

2026. 01. 13  
15:06:59

울산상공회의소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본 상의에서는 노동조합법 제2조·제3조 개정(일명. 노란봉투법) 시행에 임박하여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통해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자로서 준비하고 대응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실무교육을 개최하오니 대상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 다 음 

가. 강의명 : 노동조합법 제2·3조 개정(노란봉투법)에 따른 기업 대응 실무교육

나. 일시 : 2026. 2. 10.(화), 13:30~17:30(4h)

다. 장소 : 울산상공회의소 6층 2회의실

라. 대상 : 회원업체 인사·노무 업무 담당 임직원 70명

마. 수강료 : 무료(울산상의 회비납부사)

바. 강사 : 김관민 노무사(정동 노무사.컨설팅그룹 대표)

사. 주요내용 : 노동조합법의 이해,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기반한 노동조합법 개정의 핵심

쟁점 이해,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원하청 간 교섭 방법과 교섭 창구 단일화

※ 자세한 내용은 울산상의 홈페이지 교육 신청 게시글의 커리큘럼 참조

아. 신청기한 : 2026. 2. 6.(금), 17:00까지(\*기한 엄수)

자. 신청방법 : 울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

※ 울산상의(<http://ulsan.kor cham.net>)접속 ► 행사/교육 메뉴 선택

► '노동조합법 제2·3조 개정(노란봉투법)에 따른 기업 대응 실무교육' 클릭 ► '신청' 버튼 클릭

차. 문의 : 울산상공회의소 경영향상팀(☎ 052-228-3103)

**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이**

담당자 유강민

협조처

문서번호 경영향상팀-16

우편번호 44689

전화 052-228-3103

팀장 이효진

본부장 최진혁

(전결) (1/13)

2026. 01. 13

접수

울산광역시 남구 돈질로 97 (신정동)

/ <http://ulsan.kor cham.net>

전송 052-711-1260

/ [rkdals0925@ucci.or.kr](mailto:rkdals0925@ucci.or.kr)

/일반